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확산(Counter-proliferation) 정책 발전과 함의*

林 采 洪**

1. 머 리 말
2. 추진배경 및 경과
3. 정책적 추진현황
4. 특징 분석과 함의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UN과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소위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은 핵 및 화생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확보할 목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완제품 및 관련기술의 불법거래를 확산

* 이 논문은 2009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원광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시켜왔다.

사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문제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 시 이라크가 이란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가 당시 핵확산금지조약 당사국인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위성촬영하여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면서 주목되었다.[1] 그 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재차 부각되었고, 1991년 2월 걸프전 종료와 동시에 UN은 안보리결의안 제687호[2]를 채택하고 이라크가 자국이 보유한 모든 화학 및 생물무기와 150㎞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관련시설을 유엔특별위원회(UNSCOM)[3] 감시하에 전부 폐기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1996년 인도·파키스탄의 핵실험과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여전히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게다가 일본 이교도에 의한 사린가스 테러사건(1995), 미국의 탄저균 테러사건(2001), 그리고 2004년에 밝혀진 파키스탄 칸(Kahn) 박사 네트워크가 북한·이란·리비아를 상대로 국제적 핵기술을 밀매한 사건[4] 등은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안보환경은 국제법적 질서와 관행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들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매우 취약하며,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이 자신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제외교적

1)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2001, p. 92.
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687(1991), 3 April 1991.
3) UNSCOM(UN Special Commission)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이라크가 신고한 화생무기·미사일 및 관련 제조·저장시설과 UNSCOM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설에 대해 현장사찰을 실시했으며,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1284(1999. 12. 17)에 의해 UNMOVIC(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으로 대체되었다.
4) *Press Trust of India-Ackerman to head panel on Kahn network hearing*, IISS, 26 June 2007, http://iiss.org/whats-news/iiss-in-the-press/press-coverage-2007/june-2007/acker.

www.kci.go.kr

·군사적인 제도와 틀을 만들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 가운데 일관성있게 추진해야만 한다는 인식하에 대량살상무기 대확산정책(對擴散政策)을 동맹국들과 함께 적극 시행해 나가려는 입장이다.

본고는 국제 안보환경하에서 미국이 국제적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공세적 대응개념으로서의 대확산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그러한 대확산개념의 틀을 설정하고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이를 강화한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주요 정책, 활동과 실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미국의 대확산정책이 지니는 전략적 특징과 그 함의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추진 배경 및 경과

(1) 미 대확산 정책의 추진 배경

1) 비확산 정책의 실패

미국은 1993년 미 국방부 주도의 대확산 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는 국제적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주로 국무부가 중심이 된 외교적 차원의 비확산정책, 즉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및 제네바의정서(Geneva Protocol) 등 국제군비통제 레짐의 효용성에 의존해 왔다. 실제로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군사선진국을 제외하고는 고도의 첨단 정밀기술이 요구되는 핵무기 및 화생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완전한 개발이 쉽지 않았으므로 국제 비확산 레짐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1991년 걸프전 후 이라크의 핵·화생무기 및 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 노출되어 이것이 미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수준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기술적으로 진전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미국의 방어능력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비확산정책에 의한 외교적 대응의 한계가 지목되었다.[5]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만 하더라도, 북한뿐만 아니라 리비아·시리아 등의 중동국가들과 인도·파키스탄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5개국 이상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대확산정책은 비확산 체제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자국의 생존논리에 따른 의도적 위반으로 대량살상무기가 국제적으로 계속 확산되자 장차전에서 자국의 안보이익과 재래전 수행의 취약성이 증가하리라는 인식하에 태동하게 된 것이다.

대확산 구상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뿌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침(PDD: Presidential Direction Directive)에 근거한다. 이 지침서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들로부터 방어를 위해 선제군사행동을 포함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6] 이로부터 클린턴 정부의 애스핀 국방장관은 1993년 12월 "국방부 대확산구상(Defense 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1994년 4월 국방부 내에 대확산 부차관보실을 신설하고, 국방부의 대확산 임무 수행을 위한 국방부 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대확산위원회(Counter-proliferation Council)를 설치했다.[7]

슈나이더는 비확산과 대확산의 근본적 차이에 대해 "비확산이 외교의 벨벳 장갑이라면 대확산은 군사력을 이용한 철권이다"라고 설파했다.[8] 비

5)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The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ovember 1997, p. 53.
6) Barry R. Schneider, *Future War and Counterproliferation: U.S. Military to NBC Threats*(West port, CT: Praeger, 1999), p. 45.
7)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p. 61.
8) Barry Schneider, *Military Responses to Proliferation Threats*, in Schneider and

www.kci.go.kr

확산이 양자 또는 다자 간 합의에 의한 국제적 레짐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비축, 배치, 사용, 이전의 방지 및 폐기 등을 추구하는데 반해, 대확산은 비확산 노력의 실패로 대량살상무기가 이미 확산되었다는 전제하에 그 사용 전에 실질적 위협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만일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자국 인원, 시설과 시스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제반 조치를 취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리고 비확산은 주로 평시에 국한되지만, 대확산은 평시부터 분쟁시까지 확산방지(Prevention), 억제(Deterrence), 군사정밀타격(Counterforce), 적극적방어(Active defense), 소극적방어(Passive defense)의 5단계로 나뉜다.[9] 미 국방부는 1997년 5월에 발간된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에서 미래 준비태세를 위한 실천적 군사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확산을 제도화할 것과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는 환경하에서 원활한 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자국의 능력을 충분히 배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10]

2) 국제적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의 확산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의 지역별 확산실태를 살펴보면, 먼저 동북아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주목된다. 북한은 이미 2006년 10월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동년 7월 스커드로부터 대포동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사일 성능 개량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미사일 기술과 완제품·부품 등을 중동, 동남아 및 서남아 지역에 수출해왔다. 또한 신경 및 수포작용제 등을 포함하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와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핵무기 현대화 계획하에 동풍미사일 발사

Dowdy, p. 306.

9)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Ibid., p. 152. 대확산 각 단계별 구체적 내용은 pp. 153-154.

10)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p. 61.

시험을 지속하고 있고, 2015년까지 미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수십 기를 보유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잠재적 확산 가능성과 미 국가이익이 관여되는 여타 지역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11]

인도와 파키스탄이 위치한 서남아 지역도 대량살상무기 확산의 잠재적 원천으로 간주된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지난 1998년 5월 11일과 28일에 각각 핵실험을 실시했다. 인도는 화학무기 저장량과 생물무기 연구·개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민간 화학연구·개발시설을 무기 생산시설로 전환 가능하며 제한적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양국은 공히 지속적으로 미사일 개발능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양국은 모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서 핵관련 장비·기술·전문지식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파키스탄 간의 핵·미사일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가능성이 이를 반증해준다.[12]

이란·시리아 등이 위치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생산·이전 등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된다. 이란은 현재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안보리의 핵사찰 수용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핵활동은 NPT에 규정된 '평화적 핵이용'으로서 군사적 핵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IAEA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13]에 의한 핵사찰과 검증, 관련 정보제공, 문서와 장소 및 근무인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14]

11) Ibid., pp. 5-9.

12)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p. 16.

13) IAEA 추가의정서(INFCIRC/540)는 기존의 전면안전조치협정(INFCIRC/153)을 강화한 내용으로서, 환경시료채취지역 확대, 사찰관의 사전통보시간 단축, 신고범위 및 추가접근(any time, any place)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14)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and relevant provis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37(2006), 1747(2007), 1803(2008) and 1835(2008) in*

www.kci.go.kr

3)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결합된 위협

미 정보전문가는 국제적으로 십여 개 이상의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핵 및 화생무기 개발 능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15] 1995년 3월 20일 일본의 사이비 종교 집단인 옴진리교(Aum Shinrikyo)가 동경 지하철에 신경작용제인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12명의 사망자와 5천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만일 테러리스트가 미국에 대해 이러한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시도한다면, 미국은 자신의 안보와 동맹국 지원을 위한 능력이 심각히 저해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16]

사실 국가적 실체가 없는 비국가행위자들인 테러리스트들은 국제법적인 규약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미국은 2006년 국가안보전략서(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불량국가들과 테러리스트 사이의 대량살상무기 거래를 경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무기들이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들의 수중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자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세적 혹은 수세적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17]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AEA Board of Govenors, GOV/2008/59, 19 November 2008, pp. 1-4. 시리아는 핵개발을 추구하지는 않으나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은 북한의 도움으로 스커드 미사일을 생산·보유 중에 있다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p. 38).

15) Statement by John A. Lauder, Special Assisstant to the Director of Central Intelligence for Nonproliferation, at Commission Hearing, 29 April 1999, p. 6.

16) *Combat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Report of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Organiza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mba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999, p. 1.

17)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2006, p. 12.

4) 국제적 대량살상무기 레짐의 실효성 약화와 허점 노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위한 다자간 레짐은 개발·생산 등을 금지하는 레짐과 이전을 규제하는 수출통제체제의 이중구조로 대별된다. 대표적인 핵비확산 체제로 NPT를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없는 자'(have-not states)들은 불평등조약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핵실험을 했으나 NPT 조항에 의거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한[18]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의 국가들은 자칭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국제조약의 위상과 신뢰성에 치명상을 입혔다.

그런데, 핵비보유국들 중 소위 불량국가들은 NPT 제5조(핵의 평화적 이용)를 빌미로 군사적 용도의 핵개발을 교묘히 시도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진이 여기에 해당되며, 북한 역시 1994년 제네바 미·북합의를 비롯하여 매 협상 시마다 영변 5MW 흑연로를 핵개발용이 아닌 발전용이라고 거짓 주장을 되풀이했다.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경우에도 협약전문과 본문은 있으나 검증의정서가 부재한 관계로 협약이행을 감시하고 검증할 제도적 기구와 시스템이 미확립된 상태이며, 협약의 제목에 가장 중요한 문구인 '사용(Use)' 금지 표현이 없어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1996년 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평가회의에서 묵시적으로 '사용 금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당사국 합의에 따라 일단 문제화되지는 않았다.[19] 검증의정서 미비로 특정국가가 생물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한다 해도 유엔에 제소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해결책이 없으므로 협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후세인 정권 등 일부 국가들은 비밀리에 생물무기를 개발했던 것이다.

화학무기 금지와 관련해서 1997년 4월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1928년의 제네바의정서에 의해 규제되었다. 그러나 동 의정서는 단지 "질식성, 유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18) NPT 제9조 3항은 '핵무기 보유국'을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조하여 폭발시킨 국가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19) BWC Forth Review Conference Final Document, 6 December 1996.

www.kci.go.kr

사용 금지"[20]만을 언급했을 뿐, 평시 생산·비축 및 이전금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의한 자발적 이전금지를 규정했을 뿐 확산방지를 위한 중요한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법적 강제 레짐이 아니었으므로 현재 국제사회는 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사실상 규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대량살상무기 불법이전 가능성 증가

핵 및 화생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첨단기술과 시설, 전문인력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특정국가가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가용자원이 구비된다 하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장시간이 소요가 된다. 따라서 자원과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들과 테러리스트들은 대량살상무기 완제품, 부품 및 장비, 제조 기술의 불법 이전에 사활을 걸어왔다.

파키스탄은 중거리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해 북한과 접촉하여 가우리(Gauri) 미사일을 개발·생산했는데, 가우리 미사일이 북한 노동미사일의 복제판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다. 칸 박사는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를 제공받았다고 증언했다.[21] 2004년 5월 공개된 국제원자력기구의 내부보고서에서는 사찰관들이 리비아의 시설에서 발견한 고농축우라늄이 2003년 이란에서 발견된 증거와 유사하고, 이 모두가 파키스탄제 원심분리기임을 들어 칸 박사 네트워크에 의한 밀매 가능성에 주목했다.[22]

20)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sionous or Other 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Geneva Protocol)*, Department of State, *http://state.gov/t/ac.*

21) 김구섭 외, 『원광 군사논단』 제4호, 원광대학교, 2008, p. 423.

22) 「국제원자력기구, 국제 핵기술 밀거래 조사 위해 리비아 추가사찰」, *ttp://www.voanews.com/korean/archiev/2004-5.*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유엔 사찰관 출신인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장의 미공개 보고서를 인용하여 칸 박사의 핵기술 밀매 국제조직이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소형 핵탄두 기술을 북한·이란 등 일부 국가에 넘겼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 증거로 과거 밀매조직원으로 활동한 스위스 기업가의 컴퓨터 파일에서 북한·이란 등 10여 개국이 개발해 온 탄도미사일용 소형－파키스탄의 것과 유사한－핵탄두의 설계도면이 발견되었다.[23] 실제로 이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결과, 이란은 비밀 핵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제 핵밀매조직과 깊은 연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란이 러시아, 중국 및 국제 핵 밀거래 네트워크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과 우라늄을 구입코자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24]

이란은 핵밀거래와 관련하여 그동안 다른 국가들이나 테러집단과도 관계를 지속해왔다. 특히,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집권한 시아파,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과격파 및 아프간 반군 등과 유대관계를 맺어온 것을 감안하면 핵무기의 불법 확산가능성은 충분하다.[25] 1993년 이래 100여 개의 테러단체들이 550건 이상의 핵밀매를 시도했다는 2001년 유엔보고서가 이를 입증해준다. 9·11테러 직후 미국·영국은 물론 심지어 한국에서조차도 의심되는 탄저균 테러가 제기된 바 있었다. 테러집단은 핵무기보다 상대적으로 제조가 용이한 화학 및 생물무기의 보유에 대해 집착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수단을 소지하고 있는 그들의 수중에 생화학작용제가 들어가면 소량으로도 엄청난 사상자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26]

23) 「소형 핵탄두 밀거래 가능성」, *http://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93411//html.*

24) IAEA Director General, *Implementation of the NPT Safeguards Agreement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AEA Board of Govenors Report, 18 November, 2005.

25) 조성권, 장노순, 「미국-이란의 핵갈등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 『국가전략』 제14권 1호, 세종연구소, 2008, pp. 161-166.

26) 이헌경,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연구총서』 03-06, 통일연구원, 2003, pp. 36-37.

www.kci.go.kr

(2) 미 대확산 정책의 시기별 추진경과

1) 클린턴 행정부 시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확산 구상(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은 주로 대량살상무기 방지가 실패했을 경우 동 무기의 사용에 대하여 억제하거나 또는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27] 1994년 5월 국방부는 자체적인 대확산 정책을 확립했고, 미 의회는 국방부의 소극적(passive)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학 및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성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28] 1996년 4월에 설치된 국방부 대확산위원회는 대확산 추진에 필요한 내부 제도적 문제의 정립과 동맹국들과의 국제적 협력방안을 강조했다. 이는 대확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교리·전력기획의 발전과 함께 미군의 훈련·연습·장비조달 및 부서 간·국제적 관계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29]

미 국방부의 대량살상무기 대확산은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국제적 확산방지로서 협력적 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 연방조사국(FBI)과 미국 세관과의 협력, MTCR, BWC, CWC, 핵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등이다. 둘째는 미국과 동맹국의 국민과 군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공세적 대응인 군사정밀타격과 수세적 대응인 적극적·소극적 방어를 위한 전략개발, 그리고 교육·훈련과 장비확보 등을 통해 동맹국이 미국의 대확산 노력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30]

27)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p. 53.

28) *Report on Nonproliferation and Counterproliferation Activities and Programs (the Deutch Report)*Office of the Deputy Secretary of Defense, May 1994.

29) 1997 CPRC Report to Congress, Chapter 5, p. 2.

30)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p. 6. 여기에서 타격대상은 대량살상무기 생산 및 저장시설과 전개된 이동식 무기투발수단 등이다.

셋째는 적의 대량살상무기 표적을 제거하는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미 국방부는 정밀타격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을 시도하였다.[31]

1996년 7월 대확산에 대한 국방부 지침은 정부 내 관련된 조직 간의 공식적 관계와 분담된 책임을 규정했는데, 이로써 대확산은 국방부만이 수행하는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정부 내 연관된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공통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대확산 구상이 획득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 임무와 추진업무에도 통합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32] 미 정부 내 구성된 대확산을 위한 정부조직 평가위원회는 미국의 사활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요소로 다섯 가지를 지적했다. 즉,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이란·이라크·북한 혹은 다른 비우호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제조능력 보유, 러시아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관련 무기·기술·물자 및 전문지식의 이전, 중국에 의한 핵·화생무기 및 운반수단과 기술의 이전, 중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 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등이 그것이었다.[33]

또한, 권고사항으로서 수출통제와 대외지원을 포함한 양자·다자 간 효과적 외교정책을 수행할 국가전략의 증진,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국방능력 제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들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효율적 정보획득, 대량살상무기 사용억제 및 방지를 위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작전 능력의 향상과 함께 상기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성 보장을 제시했다.[34] 동시에 클린턴 행정부는 미사일 대확산 분야에서도 실질적 대응방안을 강구했으며, 국방부 내에 탄도미사일방어국을 설치하

31) Ibid., p. 71.

32) Jeffrey A. Larsen, *NATO Counterproliferation Policy: A Case Study in Alliance Politics*, INSS Occasional Paper 17, Proliferation Series, November 1997, pp. 15-16.

33) *Combat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bid., p. v.

34) Ibid., p. vi.

www.kci.go.kr

여 전역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와 국가미사일방어(NMD: National Missile Defense) 및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기술 프로그램 발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경우, 저고도방어와 고고도방어 시스템으로 구분되며 패트리어트-3 미사일, 해상지역방어, 전역고고도 지역방어, 해상전역방어, 중거리 공중방어 시스템, 호크 공중방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

9·11테러 공격으로 새로운 전략환경에 직면하게 된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확산 노력을 가일층 배가시켰다. 미 국방부 대확산 정책은 네 가지 주요 목표를 갖게 되었는데, 첫째 대량살상무기 관련기술이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둘째 대량살상무기가 확신될 시 그 능력을 제거하거나 혹은 파괴하며, 셋째 대량살상무기 환경하에서의 전투능력을 발전시키며, 끝으로 적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한다면 사회적·자연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었다.[35]

미국 정책은 해당 국가들을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한다. 그 첫째가 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확산국가들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들이다. 둘째는 러시아나 파키스탄과 같은 유출국가들로서 대량살상무기와 민감기술에 대한 부적절한 통제가 여타 다른 국가나 알카에다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에게로 전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매달리는 비국가행위자들과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ism)은 실질적인 대확산 전쟁이나 다름없다. 이는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또는 비국가행위자들이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가용한 전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확산의 특징은 모든 테러조직과 불량국가들을 공히

35) M. Nacht, *U.S. Counterproliferation Policy,* 25 January 2005.

위협적 실체로서 간주하며, 동시에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전통적 핵억제 대신에 실질적이고 위협적인 예방군사행동을 활용한다는 점이다.[36] 예방전쟁은 억제의 대체제일 뿐만 아니라 적에 대한 단념 및 강압외교의 실질적인 대안인 셈이다.[37]

부시 행정부의 대확산 목표와 방향 등 구체적 사항들은 수회의 대통령 연설[38]과 국가안보전략서(2002. 9; 2006. 3), 대량살상무기대응전략서(2002. 12), 테러리즘대응전략서(2003. 2),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 2006. 2) 등에서 잘 드러났다. 2002년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자국의 가치와 안보이익의 통합을 반영하는 미국적 국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략의 목표가 더 안전한 세계보다는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9]

부시 대통령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급진주의와 기술혁신으로부터 온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적들이 대량살상무기를 공개적으로 확보하려 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으나 절대로 그러한 위협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40] 미 육사에서는 미사일 기술과 결합된 핵 및 화생무기 확산이 약소국이나 소규모 그룹일지라도 강대국을 타격하여 커다란 재앙을 불러일으

36) Jeffrey Record, *Policy Analysis: Nuclear Deterrence, Preventive War, and Counter-proliferation,*8 July 2004, p. 2.

37) 예방전쟁(preventive war)과 선제전쟁(preemtive war)의 개념적 차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 선제전쟁은 적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위책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1967년 중동전쟁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국제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다. 반면, 예방전쟁은 적의 위협이 완전한 형태로 구체화되기 전에 적을 먼저 공격하는 것으로서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하고 있다(Ibid., p. 2).

38) National Journal's, *We will Prevail": President George W. Bush on War, Terrorism, and Freedom*(New York: Continuum Press, 2003). 이 자료는 2001.9.11-2003.5.26 기간 중의 대통령 연설을 망라하고 있다.

39)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 p. 1

40) Ibid., p. iii.

www.kci.go.kr

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량살상무기를 획득하여 미국과 동맹국들을 협박하려 한다고 경고했다.[41] 럼스펠드 역시 테러국가와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및 대량살상무기 간의 연계가 비록 약소 빈민국 혹은 소수단체일지라도 적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42]

부시 행정부는 국가안보의 세 가지 위협요소로서 전세계적인 테러조직망, 테러조직을 은닉하고 있는 약소국들, 그리고 불량국가들을 예시했다.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숨긴 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인 예다. 불량국가는 테러리즘 후원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특히 방어용으로 여겨지지 않는 핵무기 확보를 추구한다.[43] 따라서 국무부 부장관인 리처드 아미티지는 적의 대량살상무기가 미국에 반드시 사용될 것이라고 믿었다.[44] 딕 체니 부대통령 역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무기가 미국과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게 사용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45] 이것이 이라크전의 단초를 제공했던 셈이었다.

대량살상무기대응전략서에서도 적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으로 대확산과 비확산 그리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보다 세분화하여, 대확산 분야의 경우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효과적 차단, 강력한 선언정책과 효과적 군사력이 뒷받침이 된 억제, 그리고 선제공격과 적극적·소극적 방어가 포함된 방어책 등으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46]

41) *We will prevail*, p. 161.

42) Donald Rumsfeld, *The Price of Inaction Can Be Truly Catastrophic*, Ashi Shimbun (Japan), September 10, 2002. http://ebird.dtic.mil/Sep2002/e200209 10price.htm.

4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2, p. 36.

44) Kevin Whitelaw & Mark Mazzetti, *Why War?*, U.S. News and World Report, October 14, 2002. http://ebird.dtic.mil/Oct2002/e20021007why war.

45) Derrick Z. Jacson, *Still No Mass weapons, No Ties to 9/11, No Truth*, Boston Globe, 17 December 17, 2003.

46)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2002, pp. 2-3.

2006년의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향후 수행할 미 안보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으로 민주주의 확산과 폭정종식을 지목했다. 대량살상무기 대확산은 안보전략의 9가지 주요 과업 중의 하나였는데, 미국이 2002년 이후 국제사회 및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해 광범위하게 협력해 온 과업으로 다음의 7가지가 열거되었다.[47]

첫째는 대량살상무기로 무장된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의 야전 배치 시작이었다. 둘째는 불량국가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관련 물자들의 선적 중지를 목표로 하는 범세계적 노력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2003년 이후 70여 개국이 동참한 가운데 여러 번에 걸쳐 대량살상무기 밀거래를 차단한 일이었다. 셋째, 여러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법 시행과 정보협력으로 알카에다 핵거래 네트워크를 분쇄하였고, 넷째, 알카에다로부터 리비아로 운반 중인 핵관련 물질을 PSI로 차단한 이후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다섯째로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범죄화하고 효과적인 수출 및 금융통제를 제도화하는 유엔결의안 1540(UNSC/1540)을 미국 주도로 2004년에 통과시켰으며, 여섯째로 국제원자력기구가 핵확산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원한 것이었다. 끝으로 미 정부는 '21세기를 위한 생물방어'(Biodefense for the 21th Century) 시스템을 수립하여 생물무기 테러 대응을 위한 혁신적 구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략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보전략상 몇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협정을 위반했으며 자국의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용도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을 거부하고 있으며, 둘째는 북한이 지역 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

47)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arch 2006, pp. 18-19.

www.kci.go.kr

회를 무시한 채 자국의 적은 핵 재고량과 불법 핵 프로그램을 자랑하면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알카에다 네트워크와 연계된 조직망을 포함하여 테러리스트들이 계속적으로 대량살상무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는 핵무기 제조에 소요되는 무기급 핵물질이 아직도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생명공학의 진전은 국가 혹은 비국가행위자들이 치사성이 높은 병원균과 장비를 확보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환경하에서 억제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매력을 느끼는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군사력을 토대로 한 공격과 방어가 모두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핵전력은 계속해서 중요 역할을 할 것이며, 핵과 재래식 전력을 포함한 공세적 타격시스템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포함한 적극적·소극적 방어와 지휘·통제·정보시스템을 포함한 국방관련 하부구조 강화 등으로 구성된 신 삼중점(New Triad)[48]을 계속 발전시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위협을 경감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49]

미 국방전략서는 미국이 비정규전, 대량살상무기와 결합된 테러리즘, 그리고 자국의 전력투사력을 방해하는 파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다.[50] 또한, 2006년 QDR에서는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와해, 종심 깊은 본토방어, 전략적 기로에 선 국가들의 선택방향 유도, 그리고 적대국과 비국가행위자들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및 사용 방지를 실천적 우선순위를 꼽았다.[51] 특히, QDR은 미국이 직면한 안보위협을 전통적 위협, 비정규적 위협, 재앙적 위협, 파괴적 위협 등의 네 가지 위협으로 구분하고,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안보위협으로 테러, 폭동, 내전과 같은 비정규적 위협,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테러분자의 재앙적 위협,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군사우위를 상쇄시키는 기술과 방법을 보유한 경쟁국의 등장 및 첨단무기 공격으로 인한 파괴적 위협을 강조했다.[52]

48) *Nuclear Posture Review*, 31 December 2001. 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49) Ibid., p. 22.

50)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March 2005.

51) The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6 Feburary 2006, pp. 19-40.

3. 정책적 추진 현황

(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통합

미국의 대확산 정책이 전통적인 군사수단과 방법에 의존하는 안보개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 위협이라는 새로운 국제안보환경하에서 태동한 만큼, 군사력의 활용만을 위주로 하는 국방부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 합참의장의 대확산 헌장은 대확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확산은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로 무장된 적과 대치할 경우 미군과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의 사용, 정보수집과 분석, 외교에 대한 지원, 군비통제 및 수출통제를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용한 국방부의 활동이다."[53]

이는 대확산이 국가안보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일국의 안전보장은 정치·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외교 등 제반 분야의 능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행정부 각 부서 및 예하기관의 지

52) "4년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와 국가안보전략서(NSS)의 비교,"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424510*.

53) *CJCS Counterproliferation Charter*, 3 September 1996.

www.kci.go.kr

원과 협력 아래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확산을 위한 연방정부조직 평가위원회는 국방부를 위시하여 국무부, 에너지부, 상무부, 정보기관, 법무부, 연방수사국, 재무부 등의 대확산 임무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의회에 보고했다.[54] 미국의 대확산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자국의 미래 국가안보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자국과 자기집단의 생존과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비대칭전략을 구사하는 한 국가전략의 핵심적 요소인 것이다. 미국은 백악관이 발행한 2002년과 2006년의 국가안보전략서와 대량살상무기대응전략서 등의 여러 문서에 자국의 대확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안보전략상 대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미 국방부 주도로 동맹국과 양자협력 강화

미 대확산 전략의 목표는 불량국가와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그들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확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자 간 혹은 다자 간 군사안보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국제적 협력을 필수요소로 간주한다. 예컨대, 대확산 단계별 추진에 있어 적극적 방어수단으로서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무기체계 및 플랫폼의 설치나 혹은 대량살상무기 이전 차단을 위한 PSI와 같은 조치들은 양자 간 또는 회원국들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시행이 곤란하다.

지금까지 미국은 신종 국제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를 위시하여 한국·호주·일본 및 다른 국가들과 다양한 양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55]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대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비획득 등을 장려했고, 국무부의 경우 테러리즘 대응부서와 협력하여 동맹국과 우방국들이 자

54) *Combat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bid., pp. 43-94.

55)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Ibid., 2006, p. 6.

체적으로 그들 자신의 비상대비태세와 사후관리조치(Consequence Management) 능력을 배양하도록 미 정부 내 각 기관별 노력을 지원했다.[56]

(3)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추진

미국이 공해상 또는 심지어 외국 관할하의 수역에서조차 주류 밀매방지 차단을 위해 외국 함정에 승선한 사례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미국과 영국은 알콜 음료 밀매 차단을 위해 영국 국기를 단 해적선에 승선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정서를 1924년 1월 24일부로 상호 교환했다.[57] 그 후 미국은 마약 밀매, 불법 이민자 운송 및 대량살상무기 수송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28개국과 양자협정을 체결했다.[58]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현대사회에 적용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부시대통령은 2003년 5월 폴란드에서 PSI를 발표했는데, 이는 대량살상무기가 적대국가와 테러리스트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었다.[59] 다시 말하면, 미국은 수출통제 등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정책이 사실상 국제 외교적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무기의 완제품, 부품과 관련기술·장비·물자 및 전문지식 등이 범세계적으로 불법 이전되어 국제안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전 거부를 위한 강력한 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곧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이었다. 테러와의 전쟁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확산 전쟁[60]이라면 PSI 역시 공세적 개념의 대확산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56)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7 September 2002, p. 5.

57) *Exchange of notes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18 AJIL Supplement(1924), p. 127.

58) *Recent Developments in the Law of the Sea and china?*(Leiden: Nijhoff, 2006), pp. 251-258.

59) *Krakow Initiativ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ww.mfa.gov.pl.*

www.kci.go.kr

PSI에 2008년 말 현재 총 9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동 구상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실제 차단 성공사례는 30여 건이 넘는다. 예를 들면 이란으로 향하던 미사일·핵물질 차단, 시리아 향발 미사일 부품 선적 차단, 지중해상에서 원심분리기를 적재하고 리비아로 항해 중이던 선박의 차단 등을 들 수 있다.[61]

(4) 미사일방어체제(MD: Missile Defense)

대확산 구상을 통해 확산을 저지해야 하는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미사일은 핵 및 화생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탄두를 가까이 또는 지구상 저편으로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 효과적 운반수단이다. 활용 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항공기 등의 재래식 운반수단보다 미사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거리 적을 타격할 수 있으므로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미사일 현대화를 자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사혁신의 핵심적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사일방어체제는 대확산단계 중 적극적방어의 일환으로 대확산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62]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는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 구소련의 붕괴를 촉진했던 근본적 요소 중의 하나로서 레이건 정부 시기인 1983년부터 추진된 전략방위구상(SDI)[63]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클린턴 정부에서는 해외주둔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적국의 단·중거리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전역미사일방어(TMD)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미

60) Jeffrey Record, Ibid., p. 2.
61) 이서항, PSI의 최근 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12. 30, p. 2.
62) 『대량살상무기(WMD) 문답백과』, Ibid., pp. 152-153.
63) 한용섭 역(Peter Schweizer 저), 『냉전에서 경제전으로』, 오름, 1998, pp. 8-9; 194-218.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미사일방어(NMD)로 구성된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을 추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전역과 국가를 구분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다층적 미사일 방어체제인 MD를 추진했다.[64] MD는 상승단계에서의 요격과 상층방어, 하층방어를 위해 ABL(Airborne Laser), 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PAC-3 등 다양한 무기체계 시스템을 포함한다.[65]

미국은 1980년도 중반부터 2007년까지 1천억 불 이상을 그리고 2007 회계연도에서만 94억 불을 사용하는 등 MD체제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66] 평균 매년 약 100억 불의 비용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Fort Greely)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Vandenberg) 공군기지에 요격기지를 설치하여 1999년부터 2008년 8월까지 14차례의 요격시험을 실시하여 14번 성공함으로써 57%의 성공률을 보여 주었다.[67]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유럽의 체코에 감시용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이웃국가인 폴란드에 요격기지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러시아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68]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은 불량국가로 지목되는 북한, 이란 등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MD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64) 조홍제, 『미사일방어와 한국의 선택』, 한누리 미디어, 2007, pp. 259-260.
65)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The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ovember 2001, pp. 99-103.
66) 박휘락, 「한국 미사일 방어에 관한 주요쟁점 분석」, 『국가전략』 제14권 1호, 세종연구소, 2008, p. 80.
67) *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http://en.wikipedia.org/wiki/Ground-Based_Midcourse_Defense.*
68) *Pentagon success simulated missile defense system in California to intercept a target launched from Alaska*, Dijurnal News (Global News), http://dijunal.blogspot.com/2008/12/pentagon-success-simulated-missile.html.

www.kci.go.kr

(5) 협력적 위협감소(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과 범세계적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 강화

미국은 1991년 소련 핵위협감소 법안의 채택과 함께 넌-루가(Nunn-Lugar) 상원의원은 구소련 신생독립국가(NIS: New Independent States)[69] 영토 내의 핵·화학 및 생물무기 재고량과 관련물질 및 전문지식의 확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CTR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동 프로그램 수행의 주무부서로 국방부를 지정하였다.[70]

이러한 측면에서 CTR 프로그램은 NIS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즉 전략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폐기, 수천에 해당하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물질의 안전성 제고, 대량살상무기 기술과 전문가들의 유출 방지, 군사력 감축과 군사개혁을 위한 국방차원의 접촉 증대 등을 추구하는 21세기 미 국가안보전략 달성의 주요 요소로 간주된다.[71]

실제로 CTR 프로그램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및 ICBM 등의 미사일 폐기를 모두 망라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안보적 보상과 교환하는 대량살상무기 대확산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동 프로그램에 의해 러시아의 화학무기 저장량을 폐기하고 과거의 화학무기 생산·저장시설을 비군사화하며 화학무기 폐기시설 건설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시설을 대상으로 생물학전에 사용되는 치사성 병원균의 확산방지와 폐기를 포함한다.[72] 이와 함께 CTR 프로그램은 "다른 수단을 이용한 방어"(defense by other means)로서 적절한 국방비 지불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의 안보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받았다.[73]

69) NIS는 1991년 소련 붕괴 후에 새로 결성된 11개 신생국가들을 말하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젠, 벨로루시,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이다.

70)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Ibid., 2001, p. 73.

71) Ibid., p. 74.

72) Ibid., p. 75.

CTR 프로그램은 과거에 주로 구소련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다른 지역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확대 적용되는 추세다. 2002년 6월 캐나다 카나나스키스(Kananaskis)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에서 CTR을 GP라는 명칭하에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2012년까지 200억 불 규모의 CTR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CTR이 GP로 확대된 후 이를 이용하여 리비아, 이라크, 알바니아 등의 대량살상무기 해체 또는 폐기를 위한 작업이 시행되었다.[74]

(6)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대확산 국제협력 강화

전 세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공세적 대응을 위한 미국의 대확산 노력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국제적인 협력이다. 세계 도처의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들에 의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과 협약에 의해 금지된 위험한 무기의 개발·생산과 불법이전을 감시·저지하고 때론 차단 및 물리적 군사공세를 취해야 하는 대확산의 기본적 성격상 미국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군사안보적 가치와 이익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다자 간의 협력을 필수적 요소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대확산 협력을 같이할 대상으로 유럽, 중동 및 아태지역의 동맹국 및 우방국들을 지목하고 있다.

1) 나토(NATO) 국가들과의 협력

NATO는 미국과의 대확산 협력에 있어 전술한 세 지역 중 그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한 관계다. NATO는 1994년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73) Ibid., p. 76.

74) 김재천, 「협력적 위협감축조치(Cooperative threat Reduction) 방식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2007. 1. 16),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461.*

www.kci.go.kr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국방그룹(DGP: Senior Defense Group on Proliferation)을 설치했으며, 핵 및 화생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 프로그램은 신동맹전략개념서(NASC: New Alliance Strategic Concept), 대량살상무기 구상(WMDI: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itiative) 및 나토 5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국방능력구상(DCI: Defense Capabilities Initiative)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상기 전략개념과 구상들은 근본적으로 유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75] 먼저 NASC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NATO 동맹국 국민, 영토 및 군사력에 대해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하에 나토군의 작전적 취약성 감소와 억제력 강화 및 융통성 유지를 위해 방어태세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76] WMDI는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조치들을 담고 있는데 대량살상무기센터 운영,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정보공유와 대국민 홍보전략 발전, 대량살상무기 피습시 NATO 차원의 집단적 민간보호조치 강구 및 군사적 대비태세 등을 포함한다. 한편, DCI는 미래의 대량살상무기 도전에 적합한 NATO의 국방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나토 각국이 동맹군 방어태세 강화에 필요한 능력구비에 협력하도록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해왔다.

요컨대, 대확산에 대한 NATO 정책은 정치분야와 군사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치분야 조치는 적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혹은 동맹국 지원을 강화시켜 적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단념을 유도하고 수출통제조치를 통해 무기의 이전거부를 달성하며 침략자에 대한 제재와 고립을 추진하는 외교적 압력 등을 들 수 있으며, 군사분야 조치는 대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생산·저장시설의 제거 및 적극적·소극적 방어를 포함하고 있다.[77]

75)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Ibid., 2001, pp. 81-82.

76) Ibid., p. 80.

77) Malcolm R. O'Neill, *Challenges of Counter-Proliferation for the New NATO, http://www.users.interport.net/r/o/roger.dnai/95Book/O'Neill.htm.*

한편, 2003년의 유럽연합(EU)의 전략서 역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적 대응조치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이 실패할 경우 유엔헌장 7조와 국제법(제재, 선적 차단, 군사력의 사용 등)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강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8] 이는 1999년에 채택된 NASC와 마찬가지로 적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및 사용에 대한 핵무기의 역할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79] 특히 NATO 국가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화학 및 생물무기로 무장한 적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80]

2)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미 국방부는 걸프협력위원회(GCC: Gulf Cooperation Committee) 국가들과 요르단·이집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의 군대가 대량살상무기 상황하에서 효율적인 작전을 보장하도록 대확산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남아 협력방어구상(CDI: Southwest Asia Cooperation Defense Initiative)을 추진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대상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왔으며, 항만·공항 및 인구밀집지역의 피습시 이에 대한 사후관리조치, 적극적·소극적 방어에 대한 준비, 효율적 교육훈련과 보호장비·물자의 획득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81]

78) *EU Strategy Against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13 December 2003.

79) *NATO Assigns Counterproliferation Tasks to Military Forces,* BASIC-BITS Press Release, April 24, 1999.

80) *The Impact of U.S. Counterproliferation Policy on NATO and EU,* PSR(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Spring 2003.

81)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Ibid., 2001, p. 82.

www.kci.go.kr

3)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아태지역에서는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에 초점을 둔 상태에서, 양국의 대확산에 대한 군사적 대비능력 증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의 화학 및 생물무기와 미사일의 심각한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판단하에 양국 간의 대확산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한·미 양국 간 대확산 실무그룹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대량살상무기 방어능력, 공항 및 항만작전, 의료대책, 사후관리조치 등 제반측면에서의 대비를 강조했다.[82] 일본도 1995년 동경지하철에서의 사린가스 테러사건과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해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자국의 대비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면서 미·일 안보협의회의를 중심으로 양국 간 사후관리와 대량살상무기 방어에 대한 대확산 협력을 증진시켰다.[83]

4. 특징 분석과 함의

(1) 변화된 국제안보 환경하 새로운 안보적 접근

구소련과 동구 유럽의 붕괴는 국제사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는데, 하나는 냉전 종식과 함께 이념논쟁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면서 이념보다는 종교와 민족 간의 갈등 증폭이며, 다른 하나는 구소련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가 과거 공산권 시절보다 느슨해지면서 불량국가나 비국가행위자인 테러단체 등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었다.[84]

82) Ibid., p. 83.

83) Ibid., p. 83.

84) 실제로 독일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핵 밀거래가 이루어진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James L. Ford, *Nuclear Smuggling: How Serious a Threat?*, The Strategic Forum Number 59, INSS, National Defense University, January 1996을 참조.

종교 간의 다툼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야심과 소수 민족의 독립국가 수립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서방 강대국으로부터 항상 안보위협을 느끼는 독재국가들의 경우 급기야 정치·군사·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상대로부터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인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비대칭전략(Asymmetric Strategy)에 의존하게 되었다. 실제로 소량의 대량살상무기라 할지라도 강력한 상대를 대상으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거나 협박 또는 사회적 대혼란을 양산해 낼 수 있는데,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유럽·한국 등에서 국가적 혼돈상태를 야기한 생물무기의 일종인 탄저균 테러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85]

그러나 대량살상무기는 과거의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개발·생산·보유·사용·이전 등 소위 말해서 국제법적으로 확산이 금지되어 있는 무기로서 이의 사용시 가공할 파괴력과 인명살상력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의 확산방지는 국제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이다.

그동안 핵 및 화생무기는 개발·생산 등을 금지하는 비확산조약과 협약에 의해서 통제되어 왔으나 불량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은 상기 조약과 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무기의 개발을 시도하거나 불법밀매를 통해 이를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소 25개국 이상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게 되었다.[86]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 비확산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방부 주도의 대확산 전략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며, 이는 잠재적 확산자들에게 대량살상무기 접근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85) Kathleen A. Cornely, *Biological Terrorism: The Anthrax Scare of 2001*, *http://www.sciencecases.org/anthrax/anthrax.asp*.

86)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Ibid., 2001, p. i.

www.kci.go.kr

(2)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넘어선 공세적 전략

국제적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는 군비통제 레짐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체제와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는 신사협정으로 나뉜다. 전자가 NPT, CWC, BWC 등 주로 개발·생산·사용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후자는 NSG(핵공급국그룹), AG(호주그룹), MTCR 등 대부분 수출통제체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위반한다 하더라도 조약이나 협정 내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받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유엔안보리 제소와 결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치외교적, 경제적 혹은 군사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나 제재가 개시되기까지의 기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비확산체제에 의한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예컨대, 북한이 NPT를 명백히 위반하였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이란 당국의 비협조로 평화적 용도인지 아니면 핵무기 제조용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안뿐만 아니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안[87][88]마저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태를 볼 때 유엔안보리가 자신의 권위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 현실 위에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해 비확산 처방만으로는 자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PSI, MD, CTR 및 GP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지상·해상·공중에서 사전 차단 및 강력 억제하거나 혹은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87)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6(2006), 31 July 2006. 이란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용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IAEA 이사회 결의안 GOV/2006/14를 이행해야 하며, IAEA에 의해서 검증된 모든 농축프로그램과 재처리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8)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2006), 14 October 2006.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NPT와 IAEA에 복귀할 것을 강조하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시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3) 필수요건으로서 동맹국과의 전략적 연대 및 국제협력

불량국가나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 대확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동맹국과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협조되고 조율된 그리고 통합된 대확산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이고 이와 함께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확산자들의 불법적 행동을 감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시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나토를 비롯하여 해당지역 동맹국과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양자, 다자 간에 협력을 증대할수록 적으로부터 오는 위협의 양적 크기와 질적 강도가 분산·감소되며 적에 대한 압박은 보다 강해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확산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물자의 개발·생산 및 이전 감시와 확산방지구상에 의한 선박·항공기 차단, 미사일 방어체제의 완전한 구축을 위한 지역별 지상 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요격기지 설치와 함께 범세계적 동반자관계에 의한 핵·화생무기 및 미사일 폐기를 위한 노력 등 제반 측면을 살펴볼 때 국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본질적 요소인 셈이다.

(4) 범정부기관의 네트워크화된 조화 중시

냉전 종식과 더불어 국제안보 측면에서 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대량살상무기와 테러리즘은 특정 국가의 안보가 과거처럼 국방을 담당하는 부서에만 의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공하고 있어, 정부 부서와 예하기관들의 통합된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확산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화생무기 및 미사일 관련 품목의 수출통제, 사전 위기관리, 미사일 방어와 같은 적극적 방어, 미 국민 보호를 위한 사후

www.kci.go.kr

관리조치를 포함한 소극적 방어, 동맹국과의 연대를 위한 군사안보적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정보기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및 연방수사국 등에 대확산을 위한 기관별 적정한 임무 부여와 함께 질적 임무수행능력을 배가해 왔던 것이다.[89]

5. 맺 음 말

미 국방부가 추진한 대량살상무기 대확산은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정책의 핵심이며 동시에 대전략 개념에 따른 것이었다.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빈부국가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군사력의 크기도 이에 비례해 가는 현실 속에 종교와 민족의 갈등 증폭으로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경시한 채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이 팽배해졌다. 특히, 상대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계층의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의지 관철을 위해 비확산체제 등의 국제법과 국제관행 및 절차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손쉽게 접근가능하고 사용이 간편하며 저렴한 비용에 비해 상대방에게는 심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비대칭전략을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사회의 국가안전보장은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상이한 인식체계 위에서 추진이 되어야 하며, 보다 큰 사회안보적 비용의 지출을 강요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국가행위자들보다는 국가행위자들 간의 분쟁과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이제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들도 동시에 전면에 나섬에 따라 분쟁의 양상도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전통적 방법에서 비전통적 방법으로, 국가 간의 이익을 위한 충돌에서 민족과 종교·인종

89) *Combat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bid., pp. 43-94.

간의 충돌로 그리고 국가들 간의 분쟁으로부터 국가와 비국가행위자들 간의 충돌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과 탈레반 간의 전투가 그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은 강자도 약자도 없는, 그래서 국제법에 의한 지배보다는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해 비인도적 수단의 행사도 서슴지 않는 국제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들로서는 이러한 이상 현상의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 및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 미국의 대확산 전략은 바로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안보 현상 위에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고 세계 각 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현실주의적 측면에서 미국은 불량국가와 테러리즘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보편화로 세계 평화와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지속 전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술한 PSI, MD, GP 등을 포함한 대확산 전략의 여러 수단들을 통해 확산자들을 억제시켜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미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은 PSI가 영해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의 대량살상무기 적재 의혹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 및 화물압류까지 제시하고 있어 무해통항권을 침해한다는 국제법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보완노력을 전개해 왔다. 또한 주요 선박등록국과의 승선협정을 체결하고 '항해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 개정을 통해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대량살상무기 수송의 불법화를 달성했으며, 비국가단체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규제를 규정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제1540호[90] 채택을 주도하는 등 PSI에 대한 유엔차원의 지지 획득 노력도 전개했다.[91] 뿐만 아니라 MD 추

90) UN Security Resolution 1540(2004), 28 April 2004.

www.kci.go.kr

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와의 대탄도미사일조약(ABM: Antiballistic Missile)[92]을 파기했으며, 제네바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는 외기권군비경쟁방지조약(PAROS: Prevention of Arms Race in Outer Space)을 체결함으로써 MD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행동[93]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새로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대확산 정책에 있어 핵무기 및 핵물질의 확산 방지, 미러 간 협조를 통한 핵무기 감축, CTR 프로그램의 강화와 전면핵실험금지조약의 조속한 비준 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는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사실상 핵무기 개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NPT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NPT 강화를 위해 범세계적으로 핵물질의 생산을 중단하고 대신에 IAEA가 핵연료 제공을 통제하는 핵연료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4] 아울러 테러리스트 및 불량국가의 핵무기와 핵물질 제거 노력과 함께 21세기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동맹재건을 외교정책 목표의 일부로 설정하고 특히 대확산의 대상이 되는 21세기 비전통 안보위협 부문은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할 복합적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 북한 시리아 등 소위 불량국가 지도자들과 대면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직접외교 구현의 기치하에 힘의 외교(diplomacy of power)보다는 외교의 힘(power of diplomacy)에 의한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95]

91) 이서항, 「PSI의 최근 동향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8, p. 5.

92) 『군비통제 국제조약집』,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1993. 12, pp. 58-62.

93) Hu Xiaodi & Leonid A. Skotnikov, *Possible Elements for a Future International Legal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the Develop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 CD/1679 Working Paper, Conference on Disarmament, 28 June 2002.

94) 김성한, 「美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08-11(No. 145), 2008. 11, p. 4.

95) Ibid., pp. 5-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확산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앞서 논의한 대내외적 여러 정책과 수단 방법 및 국제협력 등은 새로운 환경 아래 미국의 미래 국가안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직접적인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한국, 그리고 주변국 일본과 NATO 국가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국의 안보이익에 손해보다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

(원고투고일 : 2009. 1. 19, 심사수정일 : 2009. 2. 27, 게재확정일 : 2009. 3. 24)

주제어 : 대확산, 비확산체제,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미사일방어체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US WMD Counter-proliferation Policy

Lim, Chae-hong

WMD Counter-proliferation led by US DOD constitutes a part of national grand strategy as well as a core of new national security policy. Apart from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s, so-called rogue states and non-state actors coaxes others to develop, produce and transfer WMD such as nuclear and chem-bio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since it causes huge damage to a superior enemy to themselves in cheap price. WMD proliferation has been constrained by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s based on diplomatic negotiation in the past, but today, reportedly even UN Security Council faces their ongoing brinkmanship tactics with no substantive progress in solution for North Korean and Iranian nuclear cases.

Now it is suspected that at least 25 countries possess or in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developing capabilities to inflict mass casualties and destruction, and also predicted that those number will continue to be increased over years. The US Counter-proliferation Policy was initiated under the perception that nonproliferation policy of diplomatic means failed, and more practical, aggressive action involving military response is required since worldwide proliferation of WMD directly challenges US national interests. In December 1993 Leslie Aspin, the Clinton Administration's Secretary of Defense launched the Defense Counter-proliferation Initiative, followed by establishing the Counter-proliferation Council the mission of which is to supervise overall mission as for counter-proliferation-related

works.

The counter-proliferation objectives and direc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 are well explicated in a number of presidential speeches and three major policy declaration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Combating Terrorism.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global peace and stability are threatened by rogue states, terrorism, and the universalization of WMD, the US is to deter proliferation, restore the world order, and protect its vital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of the allies through a number of vehicles embracing PSI, MD, Global Partnership,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Key Words : Counter-proliferation, Nonproliferation Regim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errorism,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Missile Defens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Global Partnership

www.kci.go.kr